

1. 개정이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 개편 및 인력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평가대상 조직 및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증원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청 소속기관 기구 개편(안 제25조, 제27조 및 제41조)

경찰청 소속기관의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안보수사2과를 신설하고, 경찰청 부속기관 간 사무조정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경찰인재개발원 학생과를 폐지

나. 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 경찰공무원 채용 사무 신설(안 제21조 및 제26조)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대학에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의 채용 사무를, 중앙경찰학교에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 사무를 각각 신설

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 증원(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1)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의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경감 1명, 경위 1명, 6급 1명)을 증원

2)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 9급 2명)을 증원

3)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0명(총경 1명, 경정 10명, 경감 37명, 경위 6명, 경사 10명, 경장 11명, 순경 10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및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명(경장 12명, 순경 11명)을 증원

라.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감축

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 재배치(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1) 경찰청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인력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2)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

3) 경찰청 소속기관의 원활한 기계 설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평가대상 조직 및 인력 평가결과 반영(안 별표 10)

1) 경찰청 소속기관인 서울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사국 사이버테러수사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경찰청 소속기관인 시·도경찰청에 강력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5명(경감 8명, 경위 30명, 경사 19명, 경장 20명, 순경 8명),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6명(경사 8명, 경장 12명, 순경 6명),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9명(경사 1명, 경장 13명, 순경 5명),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0명(경위 39명, 경사 11명, 경장 10명), 지능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3명(경사 30명, 경장 23명) 및 기록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6명(기록연구사 16명, 경사 60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

3)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5명(경위 34명, 경사 50명, 경장 91명, 순경 50명),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8명(경위 12명, 경사 24명, 경장 39명, 순경 15명, 5급 1명, 6급 19명, 7급 36명, 8급 38명, 9급 44명) 및 수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1명(경위 1명, 경사 2명, 경장 15명, 순경 19명, 6급 4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

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변동 사항 반영(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1)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인력 13명(5급 2명, 6급 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인력 190명(7급 5명, 8급 145명, 9급 40명)을 각각 증원

2) 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5명(6급 1명, 7급 10명, 8급 4명, 9급 6명, 연구사 4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29명(7급 24명, 8급 33명, 9급 72명)을 각각 감축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경찰청 인력 39명(6급 8명, 7급 4명, 8급 10명, 9급 16명, 연구사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18명(6급 22명, 7급 81명, 8급 1명, 9급 1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

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 직종 전환(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9급 9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2명(9급 12명)을 각각 과학기술직군 또는 행정직군으로 전환

자. 책임운영기관의 총경 정원, 4급 정원 및 복수직급 정원 한도 명시(안 제78조제2항)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수사연수원”을 “경찰인재개발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호는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만 분장한다.

제26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중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각각”을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안보수사지원과 및 안보수사과”를 “안보수사지원과·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보수사과장”을 “안보수사1과장 및 안보수사2과장”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97명(서기관·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 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행정주사 10명, 전산주 사 1명,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15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29명, 전산서기 2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9 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2명,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한다.

제7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 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860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1명, 행정주사보 82명, 공업주사보 39명,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2명, 행정서기 407명, 공업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 기 4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66명, 공업서기 보 4명, 운전서기보 219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다)은 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 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 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890”을 “1,887”로, 경찰공무원 계 “1,222”를 “1,220”으 로, 경정 “158”을 “156”으로, 경감 “391”을 “389”로, 경사 “177”을 “178” 로, 경장 “31”을 “32”로, 일반직 계 “664”를 “663”으로, 전산주사 또는 방 송통신주사 “12”를 “13”으로, 행정서기 “199”를 “197”로, 행정서기보 “5 5”를 “62”로,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4”를 “3”으로 하며, 식품위생 서기보·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2 다음에 “전산서기보 2”를 신설,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8”을 “21”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 7”을 “35”로, 사무운영서기보 “54”를 “45”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999”를 “1,989”로, 경찰공무원 계 “1,222”를 “1,220”으 로, 경정 “158”을 “156”으로, 경감 “391”을 “389”로, 경사 “177”을 “178” 로, 경장 “31”을 “32”로, 일반직 계 “773”을 “760”으로, 행정사무관 “6”을 “7”로,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3”을 “4”로, 행정주사 “33”을 “32” 로, 시설주사 “4”를 “5”로 하고,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다음에 “전산 주사 1”를 신설,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를 “13”으로, 행정주사 보 “146”을 “145”로 하며, “전산주사보 2”를 삭제하고, 시설주사보 “6”을 “4”로, 행정서기 “227”을 “221”로, 전산서기 “1”을 “2”로, 행정서기보 “7 8”을 “83”으로, 공업서기보 “3”을 “2”로,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4”를 “3”으로 하고, 식품위생서기보·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2 다음에 “전산서기보 2”를 신설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8”을 “21”로, 공업연구사 “10”을 “8”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7”을 “35”로, 사무운영서기보 “54”를 “4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34,390”을 “134,174”로, 경찰공무원 계 “129,932”를 “129,748”로, 총경 “628”을 “629”로, 경정 “3,050”을 “3,056”으로, 경감 “10,561”을 “10,578”로, 경위 “17,062”를 “17,024”로, 경사 “28,575”를 “28,520”으로, 경장 “31,369”를 “31,329”로, 순경 “38,586”을 “38,511”로, 일반직 계 “4,364”를 “4,332”로, 행정주사 “78”을 “79”로,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8”을 “46”으로, 행정주사보 “369”를 “367”로,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9”를 “57”로, 행정서기 “1,171”을 “1,161”로, 행정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68”을 “166”으로,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41”을 “240”으로, 행정서기보 “592”를 “600”으로,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77”을 “76”으로,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2”를 “63”으로,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71”을 “166”으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7”을 “1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85”를 “271”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8”을 “17”으로, 전문경력관 나군(경호 담당) “3”을 “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35,189”를 “135,034”로, 경찰공무원 계 “129,932”를 “129,748”로, 총경 “628”을 “629”로, 경정 “3,050”을 “3,056”으로, 경감 “10,561”을 “10,578”로, 경위 “17,062”를 “17,024”로, 경사 “28,575”를 “28,520”으로,

경장 “31,369”를 “31,329”로, 순경 “38,586”을 “38,511”로, 일반직 계 “5,163”을 “5,192”로, 행정주사 “115”를 “116”으로,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0”을 “41”로,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9”를 “47”로, 행정주사보 “479”를 “460”으로,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9”를 “57”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2”를 삭제,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73”을 “72”로, 행정서기 “1,443”을 “1,547”로, 행정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68”을 “166”으로,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61”을 “58”로 하며, 전산서기 1 다음에 “방송통신서기 1”를 신설,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33”을 “232”로, 행정서기보 “631”을 “666”으로,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77”을 “76”으로 하고, “시설서기보 1”을 삭제하며,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2”를 “63”으로,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71”을 “166”으로, 운전서기보 “309”를 “251”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7”을 “1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85”를 “271”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8”을 “17”로, 전문경력관 나군(경호 담당) “3”을 “2”로 한다.

별표 1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찰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생활안전교통국 자치경찰과	3명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수사기획조정관	1명 (치안감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3)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8명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3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4)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2명 (총경 1명, 경위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5) 형사국	1명 (치안감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6) 수사인권담당관	6명 (4급 또는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7)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과	1명 (총경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8) 미래치안정책국	1명 (치안감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별표 10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기록물 업무(시·도경찰청)	76명 (기록연구사 16명, 경사 60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85명 (경감 8명, 경위 30명, 경사 19명, 경장 20명, 순경 8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6명 (경사 8명, 경장 12명, 순경 6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4)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시·도경찰청)	19명 (경사 1명, 경장 13명, 순경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35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장 12명, 순경 19명, 6급 4명)	
6)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90명 (경위 12명, 경사 24명, 경장 39명, 순경 15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7)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38명 (5급 1명, 6급 19명, 7급 36명, 8급 38명, 9급 44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8)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25명 (경위 34명, 경사 50명, 경장 91명, 순경 5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9)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6명 (경위 1명, 경사 2명, 경장 3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10)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60명 (경위 39명, 경사 11명, 경장 10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11) 지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53명 (경사 30명, 경장 23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12) 범죄예방 및 순찰 업무(시·도경찰청)	196명 (경감 114명, 경위 8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13) 강력범죄수사 및 우범지역 순찰 업무(시·도경찰청)	169명 (경정 2명, 경감 167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14) 학교폭력 대응 업무(시·도경찰청)	105명 (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
2.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에서 중앙경찰학교로 이체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별표 7, 별표 8의 개정규정[채용업무 관련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중앙경찰학교가 경찰청에서 이체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44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6의 정원 2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5명, 행정서기 13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학예연구사 1명)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6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3명, 행

정서기보 2명, 운전서기보 58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313명(행정주사 7명, 행정주사보 4명, 공업주사보 28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33명, 공업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4명, 행정서기보 19명, 운전서기보 216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44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7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3명, 전산주사보 2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5명, 공업서기보 1명, 공업연구사 2명)을 제외한 별표 6의 정원 39명(행정주사 8명, 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9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6명, 기록연구사 1명)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2명(행정주사보 19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시설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18명(행정주사 22명, 행정주사보 75명, 공업주사보 5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 공업서기보 4명, 운전서기보 3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0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4명(행정서기 24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230명(행정서기 230명)은 각각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50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교무처) ①·② (생략)	제21조(교무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 (행정적 사항만 해당한다)을 분장한다.	③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u>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운영지원과) ①·② (생략)	제25조(운영지원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u>경찰수사연수원</u> 의 운영지원과장은 제27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③ ----- ----- ----- <u>경찰인재개발원·경찰수사연수원</u>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제26조(교무과) ①·② (생략)	제26조(교무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③ ----- ----. <u>다만, 제11호는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만 분장한다.</u>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u>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u>

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시설주사보 2명)을 제외한 정원 15명(행정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1명) 및 별표 8의 정원 6명(행정주사 1명, 공업주사보 5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3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5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보건연구사 2명) 및 별표 8의 정원 190명(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4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40명)은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 정원 1명(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8의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명으로 본다.

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799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1명, 행정주사보 99명, 공업주사보 39명, 공업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2명,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2명, 행정서기 293명, 공업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39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27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860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1명, 행정주사보 82명, 공업주사보 39명,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2명, 행정서기 407명, 공업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4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66명, 공업서기보 4명, 운전서기보 219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

③ (생략)

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90</u>	<u>1,887</u>	-3
경찰공무원 계	<u>1,222</u>	<u>1,220</u>	-2
경 정	<u>158</u>	<u>156</u>	-2
경 감	<u>391</u>	<u>389</u>	-2
경 사	<u>177</u>	<u>178</u>	+1
경 장	<u>31</u>	<u>32</u>	+1
일반직 계	<u>664</u>	<u>663</u>	-1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2</u>	<u>13</u>	+1
행정서기	<u>199</u>	<u>197</u>	-2

행정서기보	<u>55</u>	<u>62</u>	+7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4</u>	<u>3</u>	-1
전산서기보	<u><신 설></u>	<u>2</u>	+2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8</u>	<u>21</u>	+3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37</u>	<u>35</u>	-2
사무운영서기보	<u>54</u>	<u>45</u>	-9

[별표 6]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99</u>	<u>1,984</u>	-15
경찰공무원 계	<u>1,222</u>	<u>1,220</u>	-2
경정	<u>158</u>	<u>156</u>	-2
경감	<u>391</u>	<u>389</u>	-2
경사	<u>177</u>	<u>178</u>	+1
경장	<u>31</u>	<u>32</u>	+1
일반직 계	<u>773</u>	<u>760</u>	-13
행정사무관	<u>6</u>	<u>7</u>	+1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u>3</u>	<u>4</u>	+1
행정주사	<u>33</u>	<u>32</u>	-1

시설주사	<u>4</u>	<u>5</u>	+1
전산주사	<신 설>	<u>1</u>	+1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2</u>	<u>13</u>	+1
행정주사보	<u>146</u>	<u>145</u>	-1
전산주사보	<u>2</u>	<삭 제>	-2
시설주사보	<u>6</u>	<u>4</u>	-2
행정서기	<u>227</u>	<u>221</u>	-6
전산서기	<u>1</u>	<u>2</u>	+1
행정서기보	<u>78</u>	<u>81</u>	+3
공업서기보	<u>3</u>	<u>2</u>	-1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4</u>	<u>3</u>	-1
.	.	.	
전산서기보	<신 설>	<u>2</u>	+2
전산서기보 또는	<u>18</u>	<u>21</u>	+3
방송통신서기보			
.	.	.	
공업연구사	<u>10</u>	<u>8</u>	-2
.	.	.	
.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37</u>	<u>35</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54</u>	<u>45</u>	-9
.	.	.	
.	.	.	

[별표 7]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4,390</u>	<u>134,174</u>	-216
경찰공무원 계	<u>129,932</u>	<u>129,748</u>	-184
.	.	.	
.	.	.	
총 경	<u>628</u>	<u>629</u>	+1
경 정	<u>3,050</u>	<u>3,056</u>	+6
경 감	<u>10,561</u>	<u>10,578</u>	+17
경 위	<u>17,062</u>	<u>17,024</u>	-38
경 사	<u>28,575</u>	<u>28,520</u>	-55
경 장	<u>31,369</u>	<u>31,329</u>	-40
순 경	<u>38,586</u>	<u>38,511</u>	-75
.	.	.	
.	.	.	
일반직 계	<u>4,364</u>	<u>4,332</u>	-32
.	.	.	
.	.	.	
행정주사	<u>78</u>	<u>79</u>	+1
.	.	.	

·	·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48</u>	<u>46</u>	-2
·	·	·	
행정주사보	<u>369</u>	<u>367</u>	-2
·	·	·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59</u>	<u>57</u>	-2
·	·	·	
·	·	·	
행정서기	<u>1,171</u>	<u>1,161</u>	-10
·	·	·	
행정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168</u>	<u>166</u>	-2
·	·	·	
·	·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41</u>	<u>240</u>	-1
·	·	·	
행정서기보	<u>592</u>	<u>600</u>	+8
·	·	·	
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77</u>	<u>76</u>	-1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62</u>	<u>63</u>	+1

·	·	·	
·	·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71</u>	<u>166</u>	-5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17</u>	<u>16</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285</u>	<u>271</u>	-14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18</u>	<u>17</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경호 담당)	<u>3</u>	<u>2</u>	-1
·	·	·	
·	·	·	

[별표 8]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35,189	135,034	-155
경찰공무원 계	129,932	129,748	-184
총 경	628	629	+1
경 정	3,050	3,056	+6
경 감	10,561	10,578	+17
경 위	17,062	17,024	-38
경 사	28,575	28,520	-55
경 장	31,369	31,329	-40
순 경	38,586	38,511	-75
일반직 계	5,163	5,192	+29
행정주사	115	116	+1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0	41	+1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9	47	-2
행정주사보	479	460	-19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9	57	-2
공업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2	<삭 제>	-2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73	72	-1
행정서기	1,443	1,547	+104
행정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68	166	-2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61</u>	<u>58</u>	-3
·	·	·	
·	·	·	
<u>방송통신서기</u>	<u><신 설></u>	<u>1</u>	+1
·	·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33</u>	<u>232</u>	-1
·	·	·	
행정서기보	<u>631</u>	<u>666</u>	+35
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77</u>	<u>76</u>	-1
·	·	·	
·	·	·	
<u>시설서기보</u>	<u>1</u>	<u><삭 제></u>	-1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62</u>	<u>63</u>	+1
·	·	·	
·	·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71</u>	<u>166</u>	-5
·	·	·	
·	·	·	
운 전서기보	<u>309</u>	<u>251</u>	-58

·	·	·	
·	·	·	
열 관리운영서기보	<u>17</u>	<u>16</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285</u>	<u>271</u>	-14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18</u>	<u>17</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경호 담당)	<u>3</u>	<u>2</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157